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2.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 가. 제안이유
 - 2022년 1월 6일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의거, 자치구 사무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책무 (안 제1조~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자문 (안 제4조~제5조)
 - 학교(어린이집)·사회·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안 제6조~제8조)
 -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안 제9조)
 - 환경교육과 관련한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등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학교(어린이집),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영등포구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 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2년 1월 6일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의거 자치구 사무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3조)
-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자문(안 제4~5조)
- 다. 학교(어린이집)·사회·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안 제6~8조)
- 라.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 마. 환경교육과 관련한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 라. 입법예고(2022. 8. 11. ~ 8. 31./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지원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
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